

5. 所得稅法施行規則中 改正令

財務部令 第1,875號 1992. 2. 29

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중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를 “양도일 현재”로 하고,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를 “토지·가옥대장등본등에 의하여”로 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중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5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53조의2에 제30호 내지 제3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장애인복지체육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1. 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학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3.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보전협회 또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환경보전법국민운동추진협의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해외접대비의 범위) 영 제105조제5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외화획득사업 또는 동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를 말한다.

제56조의5제8항중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고, 동조제13항중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동조동항의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사
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times \frac{\text{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text{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제77조의2제2호중 “법 제84조 각호의 기한까지”를 “법 제84조의 기한까지”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중 “소관세무서장으로 하여금”을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으로 하고, “당해 세무서의”를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70조제4항제2호바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이 1년미만인 농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에 3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다.

제119조제6항중 “영 제233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서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지급보고합계표와 별지 제101호서식의 지급조서에 의하고”를 “영 제233조제1항에 규정된 조서는 별지 제101호서식(1)의 지급조서 또는 별지 제101호서식(2)의 사업소득지급조서에 의하고”로 한다.

제123조제2항중 “장애자공제”를 “장애자공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56조의5제8항 및 제13항, 제8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개정 이유 □

양도소득세를 증과하는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동산투기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

- 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일정한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사학진흥재단 및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함(제53조의2).
- 나.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해외접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해외접대비의 범위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수출사업자가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등으로 정함(제53조의3).
- 다.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증과하고 있는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의 유형을 3개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보유기간 2년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등으로 정함(제82조의2제3항).

〈재무부 제공〉